





COVID-19

산업 지침:

음식 포장 및 가공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



개요

2020년 3월 19일, 주 공중보건 관리자 및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 책임자는 주민 사이의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의 자택대기명령을 공표하였다.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된 질환의 정도는 아주 가벼운 질환으로부터 (일부는 증상을 보이지 않음)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까지 이른다. 65세 또는 이상의 심장질환, 폐 질환, 또는 당뇨 등의 심각한 기저질환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염은 대개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 감염자와 사람들이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그 감염자가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아직 증상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 집단별 또는 작업 집단별 COVID-19 개체수 또는 비율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 업무현장 범위 내 발생은 근로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전파를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업무현장의 예로는 병원, 장기 요양시설, 교도소, 식품 생산처, 창고, 육류가공처리공장, 그리고 식료품 매장들이 해당한다.

자택대기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공공의 안전을 확실시 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절차들을 밟는것이 필수적이다.

중요 예방 실천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 가능한 한 최대의 신체적 거리두기,
- ✓ 근로자 및 고객들/의뢰인들의 안면 가리개 (호흡기 보호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곳) 사용,
- ✓ 빈번한 손세척과 주기적 청초 및 소독,
- ✓ 본 절차들 및 다른 COVID-19 예방계획 요소들에 대한 근로자 교육.

덧붙여, 새로운 사례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식별되었을 경우,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한 신속한 개입 및 공중보건 책임자들과의 협업을 위한 장소에 적절한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목적

본 문서는 근로자들과 고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 육류, 축산품 또는 농산물을 가공 또는 포장하는 시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법령, 규제령, 또는 총괄적으로 협의된 어떠한 노동권에 대한 폐지 또는 취소를 뜻하기 위함이 아니며,

자치구의 보건령을 포함하지 않기에 완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기존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Cal/OSHA1 의 규제적 요구사항들을 대신하지도 않는다. COVID-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과 주/지역 명령들에 대한 변경사항에 주시하라. Cal/OSHA 측은 그들의 웹페이지 COVID-19 웹페이지로부터 직원보호에 관한 Cal/OSHA 일반 중간 지침 에서 더욱 종합적 지침을 전하고 있다. CDC 및 연방 OSHA은 육류 및 가금 가공 에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안면가리개 사용 요구

6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는 높은 노출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공공장소 및 업무현장의 개개인과 근로자들 양쪽 모두의 안면가리개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u>안면가리개 사용에</u> 관한 지침 을 공표하였다.

캘리포니아주 내의 사람들은 아래의 나열된 상황의 경우, 근로현장 또는 근로현장 이외의 곳에서 업무 시 반드시 안면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 모든 일반 대중과의 직접적 소통;
- 당시의 일반 대중의 존재 여부를 막론하고 그들이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의 근무;
- 다른 이에게 판매 또는 납품용 식료품이 가공되거나 포장되는 곳에서의 근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근무 또는 이곳을 도보 통행하는 경우;
- 신체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이들 (근무자의 식구 또는 동거인들을 제외한)이 존재하는 어떠한 방 또는 폐쇄된 공간 ;
-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각종 대중교통, 또는 준공공교통기관, 택시, 또는 개인 자동차서비스, 또는 합승차량의 운전 또는 가동. 승객이 없는 경우, 안면가리개가 강력히 권유됨.

이러한 규칙들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과 예외들을 포함한 완전 세부사항은 <u>지침</u> 부분에서 찾을수 있다. 안면가리개가 다른 환경에서도 강력히 권장되며, 고용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안면가리개 요구사항을 적용할수 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안면가리개 착용으로부터 면제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수용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일반적인 경우 다른사람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하여 안면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되지만 의료상의 문제로 인하여 안면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들은 실행 가능하고 의료상태로 인하여 제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랫부분이 천으로 덧대어진 안면가리개 등의 비제한적 대체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사업체들은 <u>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면가리개 지침</u>의 안면가리개 착용에 대한 예외조건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u>지침</u>에 해당하는 모든이들에 한하여 해당자들을 안면가리개 착용으로부터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업체들은 고객들, 의뢰인들, 방문객들, 그리고 근로자들 내의 이러한 예외사항들을 다룰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근무지 상의 구체적 계획

- 서면의 업무현장에 특화된 COVID-19 예방책을 모든 시설에 성립시키고, 모든 업무구역과 작업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진단을 시행하며, 각 시설마다 예방책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전담자를 세울 것.
- <u>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면가리개 지침</u> 을 업무현장 고유의 예방책에 포함시키며, 예외사항을 다루기 위한 정책도 포함시킬 것.
- 근로자들 내 COVID-19 확산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한 해당지역 보건부서의 연락 정보를 파악할 것.
- 예방책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의 대변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과 소통을 하며 예방책이 근로자 및 근로자들의 대변인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할 것.
- 업무현장이 예방책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기록하며 확인된 미달사항을 개선할 것.
- COVID-19 질병을 조사하고 감염의 위험에 업무관련 요소가 원인제공을 하지는 않았나 판단할 것. 차후의 사례 예방을 위하여 예방책을 개선시킬 것.
- 업무현장에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 <u>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지침</u>에 따라 필요한 절차들과 의례들을 이행할 것.
- 감염된 근로자와의 밀접한 접촉 (6피트[약1.83 미터] 이내에서 15분이상)을 한 사람을 밝혀내고 COVID-19 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들) 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절차를 밟을 것.
- 아래의 지침들을 준수할 것. 실패 시 일시적 가동정지 또는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환경 내 질병들을 야기 가능함.



직원교육에 대한 주제

- 어떻게 <u>COVID-19</u> 확산을 방지하며,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저질환 상태가 이 바이러스에 더욱 쉽게 감염되게 하는가에 관한 정보들.
-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 을 사용한 체온 및/또는 증상확인을 포함한 자택 자가진단법.
- 출근 삼가의 중요성:
 - 열,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혹은 몸살, 두통,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구토, 또는 설사 등 중앙질병관리본부의 서술 과 같은 COVID-19의

증상들을 보이는 근로자의 경우, 또는,

- o COVID-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아직 격리해제 상태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또는,
- o 최근 14일 이내, COVID-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잠정적으로 전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예를 들어, 아직 격리상태임)와 접촉한 근로자의 경우.
- 확진판정 이후 근무복귀를 위해서 해당 근로자는 첫 증상 이후 10일이 경과되었고, 증상들이 개선되었고, 그 해당 근로자가 최근 72시간동안 고열을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 (해열제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 COVID-19 확진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첫 COVID-19 검사 양성판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에만 근무복귀를 할 수 있다.
- 끊임없는 흉부통증 또는 압박감, 혼동, 새파란 입술 또는 얼굴 등을 포함한 증상들이 심각해질 경우 의료조치를 받기 위하여. 중앙질병관리본부의 웹페이지 에서 최근사항들과 더욱 자세한 사항들을 열람할 수 있다.
- 비누를 사용하여 20초간 문지르기 (또는,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 에 따라, 근로자가 세면대 또는 손세척소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최소 60% 이상의 에탄올 (선호됨) 또는 70% 이상의 아이소프로파놀 (비감시 하의 아동들에게 해당 제품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를 포함한 비누와 물을 이용한 잦은 손씻기의 중요성.
- 근무 시 및 비근무 시의 신체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다음 신체적 거리두기 항목을 참조할 것)
- 안면가리개의 정확한 사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o 안면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용 보호적 도구(PPE)가 아님.
 - 안면가리개는 착용자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신체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세척의 필요성을 대신하지 않음.
 - o 안면가리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함.
 - o 근로자들은 안면가리개 착용 전후 또는 안면가리개를 바로잡기 전후에 반드시 손세척 또는 손세정을 해야 함.
 - o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삼가할 것.
 - o 안면 가리개는 공유되어서는 안되며 매 근무교대마다 세척 또는 폐기되어야만 함.
- <u>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면가리개 지침</u> 에 포함된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거나 면제하는 상황들을 지시하는 정보, 또한 안면 가리개 사용을 확실시 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 근무 규칙들, 그리고 고용주가 채택한 실천들.

또한 교육은 안면가리개 면제대상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하청업자, 임시 또는 계약직원들 또한 COVID-19 예방정책과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휴대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도록 확실히 할 것. 임시직 및/또는 계약직원들을 보급하는 기관들과 상기된 책임들에 대하여 미리 상의할 것.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로 인한 병가 및 산재 보상금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 본 명령이 유효한 시기 동안 산재 보상혜택 및 COVID-19와 업무간 관련성에 대한 직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통제 방안 및 검사

- 체온 및/또는 증상 검사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근무시작 시 제공하며,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협력업체들, 계약직들,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제공할 것. 체온/증상 검사자가 가능한 한 근로자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의 적절한 대체방안인 자택 자가검사를 요구할 경우, 그 검사가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위해 자택에서 떠나기 직전에 행해진 것이고 위의 직원교육을 위한 주제들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 을 따른 것임을 확실시 할 것.
- COVID-19 증상을 보이거나 아픈 근로자들과 고객들이 집에 머무르도록 장려할 것.
- 고용주들은 안구 보호와 장갑을 포함한 모든 요구되는 보호장비들을 필요로 할경우 반드시 이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확실시 할 것.
- 고용주들은 잦은 손세척 또는 손세정제 사용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일회용 장갑의 사용을 고려해야 함; 예시로는 다른 이들의 증상을 검사하거나 공동으로 만져지는 항목들을 다루는 근로자들을 위함.
- 시설 내에 출입하는 비직원은 매니지먼트에 의해 필수직으로 구분된 자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용되어야만 하며, 출입 사전에 체온 및/혹은 증상 스크리닝[검사]이 완수되어야만 한다. 하청업자, 운전사 및 일체의 미농림부(USDA)나 미식품의약청(FDA) 인스펙터들, 그리고 기타 공장 출입하는 정기 관리들은 얼굴가리개를 착용해야한다.



세척 및 소독 규정

- 휴식실과 점심식사실, 탈의소, 층계, 계단통, 난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통제 등 출입장소 등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들에 청소를 철저히 실시할 것. 시간기록계[타임클락], 화장실 비품, 휴게실 테이블 및 의자, 탈의실 [락커룸] 및 자판기를 포함하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할 것.
- 손위생 실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제조 구역(후생 구역, 복도 등) 내에서 소독절차를 시행할 것.
- 더욱 자주 이용되는 일체 도구, 기구 및 제어기는 근무조 혹은 사용자가 바뀔 때 세척되어야 함. 이들이 식품제조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미농림부[USDA] 및/또는 미식약청[FDA]과 협찬하여 세척제품을 이용할 것.
- 배달 차량 및 기기들이 배달 나가기 전후로 세척되도록 확인하고, 배달 중 추가 위생 자재를 운반하며, 각 배달 도착지점에서 깨끗한 개인 보호 기기를 사용할 것.
- 가능하면, 전화, 책상, 사무실 또는 기타 작업 도구 및 기기를 공유하는 것을 피할 것. 필요 시, 각 항목의 사용 전후마다 세척 및 소독을 할 것.
- 각 교대 종료 시 단단한 모자와 얼굴 가리개를 소독해야만 함. 얼굴 가리개 내부를 세척한 뒤 외부를, 그 다음 손을 닦을 것.
- 모든 근무지에 위생시설이(비누 및 손세정제가 비치된 화장실 및 손세척대) 제공되도록 확인할 것. 근로자들이 개인의 작업공간을 닦고 소독할 수 있도록 필수 세정제품을 보급해야 함. 이러한 위생시설들이 가동상태에 있으며 물품이 항시 비축되어 있음을 확인 하고 필요 시 추가로 비누, 페이퍼타올, 그리고 손세정제가 제공되도록 할 것.
- <u>재향군인병</u> 과 다른 물에 관련된 질병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도설비와 장치들이 오랜 기간동안의 시설 폐쇄 이후 사용이 안전한지를 확실시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
- 가능하면, 바닥청소 시 쓸거나 병균을 공기중으로 퍼트릴 수 있는 기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 말 것. HEPA 필터를 사용한 진공청소기를 가능한 한 사용할 것.
-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업무시간 중 청소 시행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 청소 과제는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책무들 중의 일부로 배정되어야 함.
-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된 휴식 중 개인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휴식 시차제 및 추가 위생 시설을 제공할 것.
- 소독용 화학물질 선택시, 고용주들은 <u>Environmental ProtectionAgency (EPA)</u> 환경 보호국 (EPA) 허가 목록에 있는 COVID-19과 반대로 사용 허가된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하며 제품의 사용설명을 따르도록 할 것. 최근에 만들어진

바이러스성 병균들에 맞서 효과적인 것으로 분류된 소독제,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 (1갤런[약3.79 미터]의 물에 5 테이블스푼[약74 미리리터] 비율), 또는 표면에 적합한 최저 70% 이상의 알코올 용액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의 위험성, 제조업체의 사용설명, 환기 지시사항, 그리고 Cal/OSHA의 안전한 사용지시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제공할 것. 세정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제품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장갑 및 기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에 따라 요구되는 <u>천식-더욱 안전한</u>청소방법들 을 따르며 적절한 환기를 확실시 할 것.

- 건물 공기 정화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사무실 및 기타 공간에 있어 외부 공기및 환풍기의 질을 높혀, 가능한 최고 효율의 휴대용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도록 고려할 것.
- 시설 내에 환풍기가 사용되는 경우, 환풍기가 근무자들의 호흡지역에 깨끗한 공기가 환기되도록 확인할 것.
- 사전포장 식품 이용 및 음료수, 양념 및 분배용 식기에 대한 안전한 선택을 포함한 구내 식당 내의 음식제공을 조정할 것.



신체적 거리두기 지침

- 식품 가공 직원들은 종종 산업기기 및 기계장치들에 가까이 근무함. 이러한 직원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근무지 내에서 개인 간 거리두기를 실시해야만 함.가능한 한 직원들 사이에 최소한 6피트[약1.83 미터]의 거리두기를 확실히 할수 있는 수단을 시행함. 이에는 물리적 칸막이나 시각적 신호(예, 바닥 표시, 채색 테입, 또는 직원들이 서야할 지점을 가리키는 표지판) 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가능하면, 프로세싱 (가공) 기계장치를 포함한 작업대의 정렬을 수정하여, 모든 방향으로 최소한 6피트[약1.83 미터]이 거리를 둘 수 있게 함. 이상적으로, 작업대의 정렬을 수정하여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도록 함. 표지나 간판을 사용하여 직원들이 작업대에서 계속 서로 간격을 두고 휴식 중에도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도록 상기시킬 것을 고려함.
- 스트립 커텐이나 플렉시글래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된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포장 및 가공 직원들을 서로 격리시킴.
- 가공[프로세싱] 기계장치 상 거리두기를 모니터링하고 용이하게 하는 직원을 임명함.
- 필요한 경우,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신하기 위해, 일당 근무제 수를 늘리고, 기계장치 속도를 줄이거나 CDC 지침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 간격을 둠. 이를 통해 생산력이 감소되더라도 가능한 한 6피트 신체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시함.
- 고용주 결정에 의한 가공이나 생산기계장치, 근무제의 조정과 직원 근무 시차제는 공간 내의 바이러스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반면 전반적 포장이나 가공 용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일일 주간 근무로

가동되는 공장은 24시간 기간 내내 2 또는 3 교대로 직원들을 나눌 수 있음. 포장이나 가공 공장 내에서 1교대는 청소 및 위생처리에 이용될 수도 있음.

- 고객 및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된 직책 옵션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예를 들어, 캐쉬어로 일하는 것보다 재고관리, 또는 관리행정직보다 전화를 통한 작업).
- 직원의 집단화를 고려할 것(함께 그룹화함). 이는 직원들의 그룹이 항상 동일한 동료와 함께 같은 교대에 배정되도록 하여 공장의 정상 교대의 효율성을 증강시킴. 집단화는, 한 주동안 서로 밀접한 접촉을 하는 다른 개개인들의 인원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직장 내 전염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음. 집단화는 또한 바이러스 노출로 인한 격리 직원들의 수를 줄일 수 있음.
- 바이러스 전염의 제한을 위해 최소한 6피트의 격리를 확실히 하도록 폐쇄된 공간 내의 직원 수에 추가 제한을 둠.
- 협소한 복도에서 직원들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방 통로가 묘사되어야 함.
- 근무 개시 시간을 수정 또는 시차를 만들고 락커 장소를 교체하여 탈의실 내부와 시간기록계[타임클락]에서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증강시킴.
- 식품가공 직원들은 종종 유니폼 휴식시간을 갖기 때문에, 즉 이는 수백명의 직원들이 휴게실 및 식당 공간에서 한꺼번에 모일 수 있게 하므로, 휴게실이나 식당에서 동시에 모이는 직원들의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해 휴식 시차를 둠.
- 휴게실 및 기타 장소에 분리대를 추가하거나 또는 의자 및 테이블들을 제거하거나 재배열하고, 혹은 칸막이를 추가하여 직원들 격리를 더욱 증가시키고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확인함. 훈련 및 회의실 혹은 휴식과 점심식사 구역을 위한 옥외 텐트사용과 같이 지나친 인원수 수용을 위한 대체적 장소들을 식별함.
- 회의 상 참가 인원수를 제한하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및 기타 훈련 상 참가자 수를 제한함. 가능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화상 회의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함.
- 운전사가 부지에 있는 동안 자신들의 트럭 안에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되, 보안점검 입구에서 비접촉 배달 규정을 제공함.
- 현장 차량왕래가 많은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달품을 받도록 전달 장소를 지정함. 배달 운전사들로부터 최소한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함. 악수 금지.
- 배달 시 미리 수령자에게 연락함. 확인된 전달 장소에 배달하여 수령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막음.
- 출퇴근 시 가능한 한 합승을 피하도록 직원들을 격려함. 합승 또는 회사 셔틀버스 이용이 불가피한 직원들의 경우, 아래의 통제 실시가 이용되어야 함.
 - 최대한 각 차량 당 합승 인원수를 제한함. 이 뜻은 더 많은 차량을 이용함.

- o 해당 차량 내에서 직원들이 최대한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격려함.
- o 해당 차량에 들어가기 전과 목적지에 도착 시에 직원들이 손 세척제를 사용하도록 격려함.
- o 각 합승이나 셔틀버스 이용 후 공동 접촉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함 (예, 문손잡이, 핸드레일, 좌석벨트 및 좌석벨트버클).
- 직원들이 차량 내에서 기침 및 재채기 예절[에치켓]을 지키도록 격려함.



추가 지침사항

- 아래 사항에 관한 추가 지침사항은 캘리포니아 농림식품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오:
 - o 축산시장,
 - o 농작물 시장[파머즈 마켓],
 - 농장 및 목장[렌치],
 - o 묘목장
 - o 기타 관련 시설들
- 추가 지침은 정육 및 가금 <u>가공시설에 관한 CDC의 업데이트</u> 를 참조하시오.

1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 모든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